



보도 일시	2022. 9. 2.(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9. 1.(목) 10:00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장 조문희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2100-2523)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관계기관 합동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1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 실시

-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fss.or.kr/s1332/search/search0601.jsp>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운영 중

2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심의 강화

□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됩니다.

-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됩니다.

□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문희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2100-2523)
<공동>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종민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유지훈 (02-3150-2763)
<공동>	서울특별시 대부업수사팀	책임자	팀 장 김종윤 (02-2133-8890)
		담당자	수사관 최혁수 (02-2133-8971)
<공동>	경기도 경제수사팀	책임자	팀 장 정덕길 (031-8008-5090)
		담당자	주무관 최승태 (031-8008-5067)
<공동>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책임자	국 장 박중수 (02-3145-8150)
		담당자	팀 장 김재흥 (02-3145-8129)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책임자	국 장 최광식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최판균 (02-3145-5692)
<공동>	대부협회	책임자	전무이사 이재선 (02-6710-0802)
		담당자	과 장 오희숙 (02-6710-0831)

붙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

- ① (유선)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불법사금융신고센터 연결)
- ②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 금융 신고센터’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에 접속 가능

[참고] 온라인 상담 화면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e-금융민원센터	
Q&A	
언허가	
등록·신고	
정보공개	
상속인조회	
불법금융신고센터	
· 투자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투자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	부동산 투자의혹이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로서 위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대출(LTV 등 연도규제 위반, 담보물 과대평가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을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위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 편위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의 불법 행위, 불법 상호의 사용, 기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③ (채팅)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참고] 채팅 상담 화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안내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신용 불법금융대응 금융회사사회 사회적금융 기타서비스 전체

홈 >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제보신고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제보신고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 >
- 유사수신 >
- 이자계산기 >

제보신고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2
- 내방상담 :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지원
- 채팅상담 : 장애·중증질환 등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분들의 피해 상담

채팅 바로가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필요 시 수사합조를 위하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